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85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25년 5월 26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5월 29일

2.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여, 당초 사업 시행자의 기금 분할납부를 가정해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일시 납부가 발생하여 기금 수입이 변동됨
- 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설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금 납부 사업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수입계획 변경사항]

가.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1억 40백만 원을 그외수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107억 20백만 원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0백만 원을 증액하고자 함

나. 상반기 기금 납부로 이자수입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 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세외수입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경상적세외수입	—	740,183	740,183	100%
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	740,183	740,183	100%
임시적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기타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그외수입	23,740,000	32,320,000	8,580,000	36.1%

[지출계획 변경사항]

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5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암사역사공원 조성’ 229억 5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에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93억 7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 천 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3,740,000	33,060,183	9,320,183	39.3%
공공시설등 설치	—	32,320,000	32,320,00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22,950,000	22,950,000	100%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000	22,95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22,950,000	22,950,000	100%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9,370,000	9,370,000	100%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000	9,37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	9,370,000	9,370,000	100%
재무활동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보전지출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여유자금 예치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예치금	23,740,000	740,183	△22,999,817	△96.9%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85억 80백만 원을 기금수입 계획 중 '그 외수입'에 반영하고 기금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7억 40백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더해 기금지출 계획에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신설하여 229억 50백만 원을 '암사역공원 조성'에 신규 편성하고 93억 70백만 원을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5.5.26일 시장 제출하여 '25.5.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5년 기금수입 계획 >

(단위: 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3,740	33,060	9,320 (39.3%)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	740	740 (100%)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23,740	32,320	8,580 (36.1%)

< 2025년 기금지출 계획 >

(단위: 백만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3,740	33,060	9,320 (39.3%)
공공시설등 설치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	22,950 (100%)
공공시설등 설치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	9,370	9,370 (100%)
재무활동 (여유자금 예치)	23,740	740	△23,000 (△96.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¹⁾에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정책사업²⁾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지방지금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함

2)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하며,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함(「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3.7)」 p.296)

나. 검토 내용

“수입계획 변경”

-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 수입계획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그외수입’을 당초 237억 40백만 원에서 85억 80백만 원(39.3%) 증가한 323억 20백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금납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억 4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당초 237억 40백만 원³⁾에서 93억 20백만 원(39.3%) 증가한 330억 60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2024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계획 변경 >

(단위: 백만 원)

장/관/항/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비 고
합 계	23,740	33,060	9,320	
세외수입	23,740	33,060	9,320	
경상적세외수입	—	740	740	
이자수입	—	740	740	
공공예금이자수입	—	740	740	· 기금 수입 발생부터 사용시까지 이자 수입 740백만원 반영
임시적세외수입	23,740	32,320	8,580	
기타수입	23,740	32,320	8,580	
그외수입	23,740	32,320	8,580	·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일시 납부에 따른 차액 8,580백만원 증액 반영

3) 2025년 기금 산출근거

-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21억 40백만 원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 가정)
-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216억 원 (사업자와 협약 결과 반영)ㄴ

(단위 : 억 원)

대상지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개소	2,267	237.4	129.4	129.4	669.4	1,101.4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	107	21.4	21.4	21.4	21.4	21.4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2,160	216	108	108	648	1,080

- '24.10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⁴⁾(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 광역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사업추진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237억 40백만 원 규모의 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함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계획 〉

(단위: 백만 원)

구 분	'24년도말 조성액 ①	'25년도 조성계획			'25년도말 조성액 (⑤=①+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	23,740	—	23,740	<u>23,740</u>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 총괄 〉

수 입 계 획 (단위 : 백만 원)

지 출 계 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계	—	23,740	23,740	계	—	23,740	23,740
기타수입	—	<u>23,740</u>	<u>23,740</u>	예치금	—	<u>23,740</u>	<u>23,740</u>

- 당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⁵⁾에 근거하여 연 1회씩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2025년 21억 40백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으나 '25.1월 107억 20백만 원을 일시 납부⁶⁾함에 따라 그 차액인 85억 80백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4)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2024년 제1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24.10., p.9.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6)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2025년 제1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25.3.11., p.4

※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처로 규정한 '광운대역 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의 미집행 시설 토지보상비'의 빠른 집행을 위해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

- 이에 더해 '25.2월 기준 기금 수입 납부부터 하반기 사업부서 기금 사용 시까지 정기예금(3.43~3.57%), MMDA(3.41%) 등을 통해 이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7억 40백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 사업지별 기금 수입 예상액 〉

(단위 : 억 원)

대상지	합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비고
2개소	2,263.2	323.2	108	108	648	1,076	-
	(장기) 283.5 (지단) 1,043.7 (정책) 936	(장기) 229.5 (지단) 93.7 (정책) 0.0	(장기) 54.0 * 54억 지단 우선 검토	(장기) 0.0 * 108억 지단 우선 검토	(장기) 0.0 * 648억 지단 우선 검토	(장기) 0.0 * 1,076억 지단/정책	
광운대 물류부지 개발사업	107.2 (장기) 13.5 (지단) 93.7 (정책) 0.0	107.2 (장기) 13.5 (지단) 93.7 (정책) 0.0					완 납 (‘25.1.)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2,156 (장기) 270.0 (지단) 950.0 (정책) 936.0	216 (장기) 216.0 (지단) 0.0 (정책) 0.0	108 (장기) 54.0 * 지단 우선 검토 54억	108 (장기) 0.0 * 지단 우선 검토 108억	648 (장기) 0.0 * 지단 우선 검토 648억	1,076 (장기) 0.0 * 지단/정책 1,076 억	1차 납부 완료 (‘25.2.~)

-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기금 수입 변동사항 및 기금납부에 따른 예상 이자 수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외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출계획 변경”

-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 지출계획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통해 미보상토지 보상을 위해 ‘암사역공원 조성’에 229억 5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 개설’에 93억 70백만 원을 신규 편성에 따라 예치금 229억 99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 237억 40백만 원에서 93억 20백만 원(39.3%) 증가한 330억 60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2024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지출계획 변경 >

(단위: 백만 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비 고
합 계	23,740	33,060	9,320	
공공시설등 설치	—	32,320	32,3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22,950	22,950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	22,950	
시설비및부대비	—	22,950	22,950	· 암사역사공원 미보상토지 보상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9,370	9,370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	9,370	
시설비및부대비	—	9,370	9,370	·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지급
재무활동	23,740	740	△22,999	
보전지출	23,740	740	△22,999	
여유자금 예치	23,740	740	△22,999	
예치금	23,740	740	△22,999	

①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

-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미보상토지 보상을 위해 암사역사공원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를 229억 50백만 원 순증하고자 하는 것임

〈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기금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	22,950	22,950	100%
	암사역사공원 조성	—	22,950	22,950	100%
	시설비및부대비	—	22,950	22,950	100%

- 해당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⁷⁾으로 총사업비는 1,419억 39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06.5월 도시 계획시설(공원) 결정, '11.10월 서울시 투자심사, '17.12월 1단계 공사 완료, '24.10월부터 문화유산 시굴 조사가 시행 중임
- '24.12월 기준 85%의 공원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서울시 재정여건 상 대규모 보상비 확보 난항으로 현재 15% 공원부지 보상이 지연 되고 있으며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8,713㎡ 필지에 대해 229억 50백만 원의 보상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	향후투자 (2025~)
보상면적(㎡)		88,540	75,226	13,314
소요예산 (백만원)	합계	141,939	90,586	51,353
	보상비	115,564	85,064	<u>30,500</u>
	조성비	26,375	5,522	20,853

〈 암사역사공원 미보상토지 보상계획 〉

구 분	합 계	보상완료지 ('08~'24년)	보상계획(안) ※기금활용			비고
			소 계	2025년	2026년	
보상면적	88,540㎡(100%)	<u>75,226㎡(85%)</u>	<u>13,314㎡(15%)</u>	<u>8,713㎡(10%)</u>	4,601㎡(5%)	
소요예산	1,155억원	850억원	305억원	<u>229.5억원</u>	75.5억원	

7)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활용계획, 2025.1.24.

- 「국토계획법」 제52조의2⁸⁾ 제5호는 납부받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암사역사공원은 '06.5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약 19년이 경과하였으며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결정 예정인 기금 330억 60백만 원 중 69.4%에 해당하는 229억 50백만 원을 보상⁹⁾할 계획임
-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암사역사공원 잔여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지방기금법」 제2조¹⁰⁾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마무리하고 기금 사용 취지에 맞춰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이 시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9)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활용계획, 2025.01.24.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를 93억 70백만 원을 순증하고자 하는 것임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 기금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	—	9,370	9,370	100%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	9,370	9,370	100%
	시설비및부대비	—	9,370	9,370	100%

- 해당 사업은 노원구(월계동) 석계로 98-1(광운대역)부터 월계로(인덕대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¹¹⁾으로 총사업비는 420억 48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12월까지 추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23.5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23.11월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24.11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착공되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¹²⁾는 지구단위계획

11)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활용계획, 2025.2.7.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법 제52조의2제5항 전단에서 정하는 비용을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사용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등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사용 가능
 - 가.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 경관지구, 취락지구
 - 나.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주거지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 대상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¹³⁾되어 있음에 따라 93억 70백만 원의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

(단위: 백 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2,048	200	300	1,900	27,214	12,434
용역비	524	200	300	0	0	24
보상비	35,154	0	0	1,900 (시비)	24,204 (민간,기금)	9,050 (시비)
공사비	6,370	0	0	0	3,010	3,360

※ 시비 16,339백만 원, 민간(현대산업개발) 25,709백만 원(공공기여 9,370백만 원 포함)

< 암사역사공원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규모 >

구 분	위 치	규 모	금 액	제공방법
<u>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u>	월계동 298일대 (도로 및 보도정비 구간)	2,877.8㎡	<u>93.7억</u>	현금 기부채납

-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25.5월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실시, 보상액 산정, '25.8월 손실보상 협의 개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철저한 공정 관리 및 원활한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규정 가능

13)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활용계획, 2025.2.7.

다. 종합 의견

- 이번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금이 일시 납부됨에 따라 수입계획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지구단위 계획에서 기금의 사용대상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 “수입계획 변경”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설치기금을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변경된 기금의 수입 변동사항 및 기금납부에 따른 예상 이자 수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외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출계획 변경”은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 ‘공공시설등 설치’를 통해 미보상 토지 보상을 위한 ‘암사역공원 조성’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에 신규 편성하고, 이에 따라 예치금을 감액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의 토지보상 및 조성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미보상토지의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암사역사공원 잔여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마무리하고 기금 사용 취지에 맞춰 본래의 목적대로 공원이 시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은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

설 사업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지급 비용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사용대상 세부사업으로
규정된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철저한 공정 관리와 원
활한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음